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2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서지영 · 김용태 · 김대식
이인선 · 서천호 · 나경원
정성국 · 최수진 · 김미애
곽규택 · 백종현 · 이양수
강명구 · 임종득 · 김희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 외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품질심사나 관리 절차가 없어 학교별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의 편차가 발생하고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

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013호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 중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교육 자료의 검정 · 인정 ·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013호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이 법에 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 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제21013호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 ----- ----- ----- ----- ----- -----.
1. (생 략)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을 활용한 학습지원 <u>소프트웨</u> <u>어</u>	1. (현행과 같음) 2. ----- ----- ----- <u>소프트웨</u> <u>어</u> 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 는 인정한 것
3.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교육 자료의 검정 · 인정 · 선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